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이 약관은 2025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현행	개정(안)	비고
<b>제 8 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b> ① (생략)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a> » 이용안내»업무이용안내»수수료안내»예탁금이용료),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b>제 8 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b> ① (생략)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b>(인터넷 홈페이지:</b> <a href="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a> » 이용안내»업무이용안내»수수료안내»예탁금이용료)	P. 3 조문 정비
<b>제 10 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b> ① 회사는 고객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b>제11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b> ① 회사는 고객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P. 4 자구 수정
<b>제 27 조(관할법원)</b>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b>제27조(관할법원)</b>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P. 7 공정위 시정요청 사항 반영
<b>&lt; 신 설 &gt;</b>	<b>부 칙(2025.05.13.)</b> 이 약관은 2025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P. 9 조문 정비

※ 해당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해당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